

	물품구매및계약에관한규정	규정번호	3-2-5
		제정일자	2005.03.01.
		개정일자	2018.03.01.
		개정차수	6차
		소관부서	행정지원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요되는 물품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구입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의 정의) 물품이라 함은 원자재, 기자재, 가공품, 비품, 소모품 및 인쇄물 등 내·외자로 구입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 직제에 있는 모든 부서의 물품구매 행위에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물품구입 절차 및 방법

제4조(구매요청) 물품구매를 요청하는 부서에서는 소정양식에 품명, 규격, 수량, 용도를 명기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방서, 카탈로그, 도면, 견본 및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물가조사 및 가격사정) ① 가격사정은 물가조사를 기초로 하여 대학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한다.

② 물가조사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1. 직접조사방법: 직접 시장가격 조사
2. 간접조사방법
 - 가. 가격표, 카탈로그에 의한 조사
 - 나. 공인기관 발행 물가월보에 의한 조사
 - 다. 거래 실례가격

③ 원가계산: 긴급품목, 희귀품목, 외상거래 또는 기타 사유로 견적서 청구가 불가능하거나, 타 방법에 의하여 물가조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원가계산서 및 물가표를 첨부하여 견적서에 대신할 수 있다.

제6조(구입방법) ① 물품 구매의뢰를 받은 부처는 그 적절한 구입방법을 해당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경쟁계약, 수의계약 또는 단가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총장의 결재 후 집행한다.

② 구입물품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계약으로 구입한다.

제7조(검수) 납품업자가 물품납품시 신청부서에서는 물품검수를 작성 제출한다.

제8조(대가의 지급) 검수를 완료한 후 5일 이내에 물품의 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제3장 계 약

제9조(계약의 원칙) 총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계약담당자) ① 대학의 계약담당자는 총장으로 한다.

② 총장은 계약규모에 따라 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계약은 계약담당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체결한다.

제11조(계약의 방법) 계약담당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구매일 경우 공고를 통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③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장 예정가격

제13조(예정가격의 비치)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붙일 사항의 가격을 당해 사항에 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이를 미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장기물품 제조 등의 경우에는 총 제조금액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의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경우에는 그 통제가격의 범위 내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와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량 구매 등으로 그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다만,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 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예정가격의 기초금액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초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하게 기초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제16조(경쟁입찰)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구매는 경쟁입찰에 의하되, 계약의 목적이나 물품의 성질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경쟁에 부칠 수 있다. 다만, 그 성질상 일반경쟁입찰에 붙일 경우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5장 일반경쟁

제17조(경쟁방법)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의 경쟁은 입찰방법으로써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18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9조(일반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일반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당해 입찰의 목적물에 필요한 시설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제20조(입찰공고) 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대학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는 그 입찰일 또는 개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및 공사입찰은 예외로 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21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붙이는 사항(공동도급입찰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과 대학 회계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7.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입찰참가신청)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제23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2. 소정 기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찰서가 소정 기일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5. 입찰참가자 중 담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기타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제6장 지명경쟁

제24조(지명경쟁계약) ① 제11조 단서조항에 의하여 지명경쟁계약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성질,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예정가격이 1억원 이하의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예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 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명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입찰대상자의 지명)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승낙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장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

제26조(개찰) ①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③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27조(입찰 및 낙찰자 결정) ① 입찰은 예정금액 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에 따라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② 1회 투찰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 회수에 제한 없이 실시하며 그때까지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한다.

③ 재공고에 의하여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예정가격 등 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28조(동일가격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나, 입찰의 성질이나 경우에 따라 심사결과,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등을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수의계약

제29조(수의계약) ① 제11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제조 및 구매

가.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로써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나.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에 있어서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인 경우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복수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복수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재공고입찰에 불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불일 때에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재지명입찰에 불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불일 때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단가계약)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구입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조달시간을 단축하고 규격과 품질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①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에 한하여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②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대학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대학홈페이지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총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학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대학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의 시기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 들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제34조(계약서 작성) ① 구매부서는 계약 상대를 결정 한 후 지체 없이 소정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예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의 물품구입은 계약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제9장 입찰 및 계약이행의 확보

제35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대학을 피보험자로 한 입찰보증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대학에 귀속

시켜야 한다.

제36조(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대학을 피보험자로한 보증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하자보수보증금) 계약자가 의무를 이행한 후 일정 기간의 제품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대학을 피보험자로 한 보증금액 이상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조구입물품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담보책임기간은 그 물품의 검수가 완료 된 날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제39조(지체상금) 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체일수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등에 따라 지체상금률이 달라질 수 있다.

② 계약상대방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연장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40조(제보증금의 대학 귀속) 제 보증금에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은 대학에 귀속된다.

제4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을 시행령에 준용한다.

제4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 년 1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